

교원 인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임용, 승진 및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원”이라 함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전임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개정 2012.7.21)
- ③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등을 말하며, “강사”라 함은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3.9.1.)
-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강의전담, 연구전담, 외국인교원으로 구분한다.(신설2015.3.1.)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전임교원에게만 적용한다.

- ② 비전임교원과 시간강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2015.3.1.)

제4조(임면권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조(경직의 금지) 교원은 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경직이 가능한 경우 또는 타 대학교 및 기관에 정기적으로 강의 출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3.1.)

제6조(교원의 소속) 교원은 학부(과), 각 대학원에 소속을 두며, 학부(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 등 필요한 경우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강의의무) 교원은 강의책임시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무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예외로 하며 해당학기 책임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교원의 조치사항 및 강의료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2024.5.1. 개정)

제8조(업적실적의 의무) 교원은 임용시기별로 정한 업적실적 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기간의 업적실적을 매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본교 임용 후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정년퇴직일이 3년 이하인 교원에게는 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5.3.1.)

제9조(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개정2015.3.1.)

②교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한 날짜가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제10조(인사발령의 효력)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1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정관 제49조에 의거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5.3.1. 개정 2023.9.1)

②인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총장을 제외한 교무위원과 총장이 임명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1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교무위원 임기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 자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2014.8.1.,2019.3.1. 2022.1.13)

제12조(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13조(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2.7.21)

2.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부교수 이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①항의 규정에 의 한 임용의 동의를 함께 있어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제1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면 절차)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된 교원에 대해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임 용

제17조(임용시기) ① 신규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로 한다.

③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1일로 한다.(개정2015.3.1.)

제18조(임용계약) ① 교원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제로 임용한다.(개정2012.7.21)

구분	2002년 2월 28일 이전 신규임용 교원	2002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
정교수	정년	65세(정년까지)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계약으로 정한 기간

②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③ 업적 및 성과

업적(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실적, 진로상담,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④ 재계약 조건 및 절차

1.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교원임용계약은 본 대학교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신규임용) ① 교원 신규임용은 수시로 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채용에 관한사항은 “전임교원 신규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단,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3.12.1. 개정)

② 신규임용 절차는 “전임교원 신규 임용 규정”에 따른다.(개정2023.12.1.)

③ 신규임용 시에는 교육경력, 연구경력, 신양노선이나 신학사상, 기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등으로 아래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단, 타 대학의 교수로서 본교의 정교수로 임용된 자는 임용 후 3년 내에 정년보장 교수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개정2012.7.21)

구 분	정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조교
연 수	65세(정년까지)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계약으로 정한 기간	1년

④ 본 대학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본교 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경우, 퇴직전 직급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개정2015.3.1.)

⑤ (삭제2015.3.1.)

⑥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업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비전임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 등을 임용하는 경우

⑦ 교원의 신규 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을 명시하여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어서 추가로 공고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간을 정하여 즉시 재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19조의1(기금 출연에 의한 신규임용) 본교 건학이념에 합당하고 연구업적이 우수한자로 교회 및 개인이 출연한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교수를 채용할 수 있다.

1.연금 및 보수는 출연기금 내에서 운영한다.

2.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업적평가 후 1회(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기금의 규모가 교수 운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금 교수를 면직 할 수 있다. (신설2015.3.1.)

제20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신설2015.3.1.)

5.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2015.3.1.)

6. 본 교단 소속 교회에 교적이 없는 자. 단,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 후 2년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에 교적을 갖도록 한다.(신설2015.3.1.)

7. 본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하거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신설 2015.3.1.)

제21조(신규임용자의 자격) ① 신규임용 시에는 수세 후 5년이 경과하고 신앙이 모범적인 자를 임용한다.

② 신규임용 시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박사과정 수료자도 할 수 있다. (2023. 2. 8 개정)

1. 신학과

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학력 인정 소지자

(개정2019.3.1.)

나.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 졸업자, 본교단 혹은 본 교단과 신학정체성이 동일한 해외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개정2015.3.1.)

다. 목사 안수 후 본 교단 혹은 본 교단과 신학 정체성이 동일한 국내외 교단(교회)에서 교역한 자 또는 대학에서 3년 이상 강의한 자(개정2015.3.1.)

2. 신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교원임용은 학부와 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되, 연구실적과 교수능력이 탁월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신규임용 제출서류) 신규임용 교원의 제출서류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규정을 따른다.(2023.12.1. 개정)

제23조(재임용) 교원의 재임용은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각 영역별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충족한 교원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각 영역별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탈락한 것으로 한다.(2015.3.1., 2024.5.1.개정)

1. 삭제(2024.5.1.개정)
2. 삭제(2024.5.1.개정)
3. 삭제(2024.5.1.개정)

제24조(재임용 제출서류)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심사조사서
2. 연구실적물 각 4부(원본 1부, 별쇄본 3부)
3. 기타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25조(재임용결과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21조에서는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③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제26조(이의신청) ①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 평가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교원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3.1., 2019. 3. 1.)

②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임용기간 만료) ① 학기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고도 재임용되지 않는 교원은 본교 교원직에서 탈락된 것으로 한다.

③ 삭제(2019.3.1.)

제28조(승진시기 및 승진 소요연수) 승진시기 및 승진 소요연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2.7.21.,2015.3.1.)

1.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로 한다.
2.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는 아래 표와 같다.

직 위	최소한의 소요연수	승진되는 직위
조 교 수	6 년	부 교 수
부 교 수	6 년	정 교 수

제28조의2(특별승진) 교원(조교수, 부교수)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승진연한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 할 수 있다.(2024.5.1. 신설)

1.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2.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있는자
3. 재해 및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 또는 인명의 피해를 방지한 공로가 있는자

제29조(승진요건) ① 모든 교원 승진대상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단, 예능계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개정2015.3.1.)

- ② 모든 교원의 승진심사 청구는 채용 또는 승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하며, 2회에 한 한다.

제30조(승진 제한) ① 징계처분으로 직위 해제를 받거나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 ② 전임대우 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학위취득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 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본교의 교원은 모든 연구영역, 교육영역, 교내외 봉사영역을 통해 본교의 정체성에 입각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본교 소속한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과 신앙을 이탈하여 본교의 건학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승진, 재임용 등을 유보할 수 있다.

제31조(승진 연구실적) 연구실적은 교원업적평가(교육, 연구, 봉사)기준에 따라 승진연수 이내에 해당하는 실적물을 다음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최소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였을 시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에 대한 심사기준은 아래표로 한다. 정교수로 승진시에는 승진 후 다음 학년도부터 3년 이내에 정년보장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2.7.21.,2023.9.1)

승진직위	교육	봉사	연구
조교수에서 부교수(최근6년)	360점 이상	360점 이상	800% 이상
부교수에서 정교수(최근6년)	420점 이상	420점 이상	900% 이상
정년보장(최근6년)	480점 이상	480점 이상	1,000% 이상

제32조(승진임용 제출서류) 승진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심사조사서
2. 연구실적물 각 4부(원본 1부, 별쇄본 3부)
3. 기타 승진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4장 재계약 임용

- 제33조(재계약 임용의 조건)** ①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조건은 교원인사규정 제3장 제18조 ①항 2002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에 준한다.
② 임면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제34조(재계약의 절차)** ① 재계약 대상 교원은 현 직급 임용일부터 승진심사 전까지의 교원 인사규정에 의거한 업적보고서를 계약만료 6개월 전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현 직급 임용기간 중의 업적을 심사하며, 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준한다.

제5장 정년보장 임용

- 제35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보장심사를 위해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를 두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이를 겸무한다.
② 정년보장 심사는 별도의 심사평가규정을 두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2015.3.1.)

- 제36조(정년보장임용의 요건 및 신청)** ①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부교수로서 6년이상 재직하고 정교수로서 승진한 후 교원인사·업적심사에 관한 내규에 의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② 정년보장 소요연한에 도달한 전임교원은 승진후 다음학년도부터 3년 이내에 3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9.1.)
③ 3회째 심사를 신청한 교원이 정년보장임용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2년이 경과하여야 정년보장임용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23.9.1.)
제36조의1(정년보장 임용의수) 정년보장 임용 교원수는 본교 교원 정원범위의 25% 이내로 한다.(신설2014.2.1)

- 제37조(정년보장심사의 절차)**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교원은 현 직급 임용일부터 심사 직전 까지의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된 업적평가결과와 소정의 양식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원인사·업적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현 직급 임용기간 중의 업적을 심사하며, 심사 기준과 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 및 제10장 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따른다.(개정2015.3.1.)
③ 총장은 심사결과를 법인이사회에 보고하고 해당교원의 정년보장 임용여부를 제청한다.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

-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제출방법)** 1. 인문·사회계열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시 연구업적은 국제·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실적으로 한다. 국제전문학술지는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한하며, 국내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평

가하는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를 발행하는 해당학과 전공관련분야 학회의 학술지에 한한다. 단, 예능계열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시 연구실적은 규정된 국내외 연주, 발표, 지휘, 창작활동 등 발표회 실기점수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은 질병 및 기타 인정할 만한 특별한 경우 최대 100%까지만 인정한다.

(개정2014.2.1., 개정2019.3.1.)

2. 연구실적은 논문 별쇄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단, 연구실적 중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임용일 1개월 전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음악분야에 속한 교원의 연구실적은 공연 실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연물 자료는 영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3.1.)

3. 교육부 또는 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보고서 및 국책사업 연구보고서도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학교정책상 필요한 보직 수행을 맡을 경우에도 교원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9.1.)

제39조(연구실적물의 인정 범위 및 평가기준)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물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장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9.3.1.)

2. (삭제) (2019.3.1.)

3. (삭제) (2019.3.1.)

제40조(연구실적물 심사) 연구심사를 심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정하며 연구실적물은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을 얻어야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9.1.)

1. 심사위원 수

가. 본 대학교의 동일직급 이상의 교원 : 2명(단, 본 대학교 해당교원이 없을 경우 타 대학교 교원으로 위촉한다.)

나. 타 대학교의 해당전공분야 상위직 교원 : 1명

2. 심사위원 위촉방법

가. 본 대학교 심사위원 : 교원인사위원장이 위촉

나. 타 대학교 심사위원 : 타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장이 위촉

3. 심사료 : 심사료는 타 대학교 심사위원회에게만 지급한다

제7장 연구년 및 휴직

제41조(연구년 교원) 본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교원연구년 제도를 두되, 6년 이상 본교에 근속 재직한 교원에게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 1년간 국내·외에서 연구 활동에 전념도록 한다. 단, 대학의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속에 관계없이 연구년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별도의 세부 규정에 따른다.(2023.3.1. 개정)

제42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20.11.1.)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개정 2020.11.1.)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20.11.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 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개정 2020.11.1.)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2012.7.21)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2012.7.21)
11. 교원이 공익목적의 공공기관에 임용될 때(2012.7.21.)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개정 2020.11.1.)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개정 2020.11.1.)

제43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1.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2.7.21)
5.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개정2012.7.21)
6. 제4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4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개정2012.7.21) 이내로 한다.
8. 제4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7.21)
9. 제4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0.7.21)

10. 제4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7.21.)
11. 제 42조의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0.11.1.)

제44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2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5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기본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12.7.21)
② 제42조 제2항, 제4항, 제6항 및 11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21)

제8장 해임 및 징계

제46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 또는 제②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②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전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①항의 직위해제 또는 제②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야 한다.
⑧ 제②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통·폐합에 의하여 폐과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9장 보 직

제49조(보직임명) ① 본교 법인 정관 90조에 따른 교원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제①항의 보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0조(사무 인계인수) 교원이 보직 임면을 받을 경우 임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장 교원업적평가

제51조(업적평가) ① 교원의 승진, 재임용 등 인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봉사의 업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15.3.1.)

제11장 인사사무처리

제52조(책임부서)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관리는 교무처 교무과에서 행한다. 단, 교원의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보수는 경리과에서 행한다.

제53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 서류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포상에 관한 서류
3.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54조(인사기록 변경) 교원의 신분, 자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임용취소)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된 교원을 임용하였음이 발견될 경우 총장이 제청으로 이사장은 당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5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법인정관에 따르며, 휴직 만료 후 복직 또는 판결에 의한 재임용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신설2013.8.9)

제57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장을 경유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신설 2012.7.21.)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제38조와 제39조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임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31조(승진연구실적) 및 제36조(정년보장임용의 요건 및 신청) 요구기준은 2023년 9월 1일 이후 임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